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3. 11. 10.

제안자 : 장인기 의원외6인

1. 수정이유

고용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양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명문화 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2. 수정 주요 골자

○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규정 신설

- 제4조(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의 면제조항 3항 다음에 4항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사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안 제4조 ④)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용자가 직원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양도 받은 직원용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